

자산빈곤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ituation of Asset Poverty and It's Policy Implication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산은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저축과 자산 축적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실효성 있는 탈빈곤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실행해 온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제도 등도 우리사회에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자산축적이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빈곤대책과 예산으로는 빈곤층이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고 심화되는 빈곤의 고착화나 대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현행과 같이 현금을 지급해 소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여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

산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이 최고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이나 비정기적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산을 가진 저소득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즉,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빈곤층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목적도 자산형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빈곤탈출의 기반과 심리적 안정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¹⁾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있다.

자산을 형성시키는 빈곤정책은 빈곤층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인적자본을 개발함으로써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업기간이 더 단축됨으로써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부모가 저축을 하거나 자산이 있을 경우 그 가구의 자녀들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저축 습관과 자산 축적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²⁾.

이러한 논의와는 근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다르지만 자산형성은 노후소득보장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은퇴자산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의 부족과 예상보다 오래 사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은퇴 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실제 은퇴 이후의 생활비가 은퇴 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축적된 은퇴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은퇴 이전 자산형성의 필요성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긴 노후기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자산형성이 필수적이다³⁾.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도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은퇴시점에 가까워서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

1)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4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인 '디딤씨앗통장'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도시의 성격상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통장'을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본격 시행하였고,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적립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2009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이태진·신영석·김미곤 외(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은퇴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여운경(2009), 전승훈 외(2009), 최현자 외(2009), 백화중 외(2010)' 등이 있음.

여 소비 또는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비수준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산이 부족한 빈곤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물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사회 자산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산빈곤의 정의

자산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빈곤과는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Haveman and Wolff(2004)⁵⁾의 개념을 적용한 남상호(2009)⁶⁾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⁷⁾.

Haveman and Wolff(2004)의 연구에서 자산빈곤은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소득이 없을 때 자산으로 가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고용이 되는 기간을 소득

의 발생에 합리적인 기간이다. 본고에서는 남상호(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를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자산빈곤선은 최저생계비의 6개월 금액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소득빈곤에서 빈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득의 정의가 필요하듯이 자산빈곤에서는 자산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자산유형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는 정책의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 자산은 적립금을 의미하는데, 적립금은 본인이 매월 적립하는 본인적립금, 본인적립금에 비례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후원단체 등이 적립하는 매칭지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의 자산은 금융자산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은퇴자산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에서 자산은 일반적으로 연금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특정한 자산유형에 한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산빈곤층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산유형을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1’과 ‘자산’에서 거주주택의 가격을 제

4) 대표적인 연구로 ‘이태진 외(2005), 남상호 외(2008), 남상호(2009), 강성민 외(2009), 석상훈(2011)’ 등이 있음.

5) R. Haveman and E. N. Wolff(2004),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2).

6) 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자산빈곤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병인(2012)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외한 순자산으로 측정한 ‘자산2’, 그리고 금융 자산으로 측정한 ‘자산3’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자산으로부터 소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⁸⁾.

그리고 본고에서는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평균 또는 중위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산빈곤선으로 하는 상대기준의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상대기준으로는 자산빈곤을 정의할 경우 평균 또는 중위자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위자산의 50%를 상대적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한다.

3.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

자산빈곤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규모도 함께 제시하여 자산빈곤이 소득기준 빈곤에 비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의 12.9%가 빈곤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공적소득이 전 프로그램⁹⁾이 확대되면서 2009년 현재에는

표 1. 자산의 정의

항목		구성내역
측정 항목	총자산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부동산자산	자가주택 + 소유부동산 + 점유부동산
	자가주택	거주주택가격
	소유부동산	거주주택외 소유 주택 + 주택외 건물 + 토지
	점유부동산	거주주택외 점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준 것 + 기타(권리금 등)
	금융자산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 + 기타(사채 등)
	기타자산	농기계 + 농축산물 + 자동차 + 기타(운동클럽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부채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 + 외상 및 미리탄 계돈 등
자산 유형	자산1	총자산 - 부채
	자산2	자산1 - 자가주택
	자산3	금융자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10.

8) 은퇴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9) 2008년의 경기침체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가환급금이 도입되었고, 같은 해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전체 가구의 7.1%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소득빈곤층이 감소 추세와는 달리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 가구는 2005년 전체 가구의 13.3%에서 시작하여 2006년 13.5%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12.3%로 감소하였지만, 2008년에 들어와 13.2%로 상승하여 2009년 현재 13.1%로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1’에서 자가주택의 가격을 제외한 ‘자산2’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 가구는 2005년 전체 가구의 41.3%에서 시작하여 2006년 41.6%로 상승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돌아서 2009년 현재에는 39.6%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 기준의 자산빈곤 가구는 ‘자산2’의 기준보다 다소 낮

은 수준이며 2005년 전체 가구의 43.8%에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에는 36.4%를 기록하고 있다. ‘자산1’ 기준과 비교하여 ‘자산2’와 ‘자산3’의 자산빈곤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산구조가 대부분 자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¹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빈곤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 중에는 가계 부채를 포함하고 있는 ‘자산2’ 기준의 자산빈곤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분포를 반영하여 상대기준에서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를 다시 추정해 보면 절대기준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 가구는 절대기준과는 달리 2005년 전체 가구의

표 2. 연도별 자산빈곤층의 추정 규모(절대기준)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산1	13.3	13.5	12.3	13.2	13.1
자산2	41.3	41.6	40.4	39.8	39.6
자산3	43.8	40.9	39.8	38.1	36.4
소득	12.9	10.5	9.6	8.0	7.1

주: 1) 자산1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함.
 2) 자산2는 자산에서 자가주택의 가격을 제외한 순자산을 의미함
 3) 자산3은 금융자산을 의미함.
 4) 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함.
 5)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¹²⁾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10) 자산과 부채의 측정시점을 조사시점으로 하는 일반 패널조사와는 달리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6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1차년도 조사에서 자산의 측정시점은 2005년이 됨.

11)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8%가 실물자산에 해당함. 이 중 부동산의 비중은 73.6%이며, 금융자산의 비중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이창선, 2012).

12)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중치를 사용해야 함.

31.6%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39.7%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 가구는 2005년 전체 가구의 43.1%에서 시작하여 2008년까지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자산빈곤 가구가 48.4%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자산3'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 가구는 2005년 전체 가구의 39.0%에서 시작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자산2'에서와 같이 2008년 이후에는 자산빈곤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2.2%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과 2009년 사이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절대기준으로 2009년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상대기준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산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할

경우 평균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 미만을 빈곤선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양한 자산빈곤의 규모 제시되는 문제가 있고, Haveman and Wolff(2004)의 자산빈곤 기준의 핵심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가구의 소득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산만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절대기준을 사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자산빈곤층의 특성

자산빈곤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자산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빈곤 가구는 근본적으로 소득빈곤 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담

표 3. 연도별 자산빈곤층의 추정 규모(상대기준)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산1	31.6	33.0	33.5	34.2	39.7
자산2	43.1	43.1	42.9	42.8	48.4
자산3	39.0	38.3	37.9	38.1	42.2
소득	20.6	20.9	20.4	19.9	18.3

주: 1) 자산유형 및 소득의 정의는 <표 2>와 동일함.

2) 자산빈곤은 자산형태별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빈곤은 경상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임.

2)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특성으로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고용상태는 비취업상태에 있을수록, 거주지역이 광역시 이하일수록, 그리고 월세에 거주할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빈곤이란 사전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빈곤 가구의 근본적인 특성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산유형간 비교를 통하여

비교 항목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자산유형별 자산빈곤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4 참조). 먼저, ‘자산1’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빈곤한 다른 자산유형의 가구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40대 중후반의 비율이 높으며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자가보유율이 높은 집단이며, ‘자산3’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표 4. 자산빈곤층의 특성(2009년 기준)

(단위: %)

구분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성별	남성	81.9	60.6	83.4	72.7	84.0	70.8	80.8	57.4
	여성	18.1	39.5	16.6	27.4	16.0	29.3	19.2	42.6
연령	30세 미만	6.0	6.1	6.8	4.9	6.6	5.0	6.3	1.6
	30~34세	8.2	6.4	8.6	7.1	9.6	5.2	8.5	1.0
	35~39세	11.3	9.9	10.7	11.9	12.4	9.0	11.7	3.8
	40~44세	11.6	12.0	10.8	13.0	11.7	11.5	12.1	5.4
	45~49세	12.5	14.6	12.4	13.2	12.4	13.5	13.3	5.8
	50~54세	11.8	12.8	12.3	11.4	12.9	10.4	12.4	6.2
	55~59세	10.4	6.5	11.1	8.0	10.6	8.5	9.9	9.4
	60~64세	7.9	5.7	8.5	6.2	8.1	6.9	7.8	5.7
	65~69세	7.7	7.3	7.5	7.8	6.8	9.1	7.5	10.1
	70~74세	6.5	6.5	6.1	7.1	5.2	8.9	5.7	17.4
75세 이상	6.1	12.4	5.1	9.6	3.9	12.1	4.8	33.6	
최종학력	초졸 이하	20.0	32.7	18.2	27.0	15.3	32.9	18.8	60.1
	중졸	11.3	14.3	10.7	13.3	10.2	14.4	11.8	11.3
	고졸	33.6	35.0	33.1	34.8	32.9	35.5	34.8	20.2
	대졸 이상	35.1	18.0	38.0	25.0	41.7	17.2	34.6	8.4

〈표 4〉 계속

구분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8.2	57.9	82.0	65.7	83.1	62.4	79.1	26.5
	비취업자	21.8	42.1	18.0	34.3	17.0	37.7	20.9	73.5
배우자 유무	있음	72.5	43.0	73.8	60.6	74.8	57.9	70.5	44.1
	없음	27.5	57.0	26.2	39.4	25.2	42.1	29.5	55.9
점유형태	자가	59.4	13.4	55.8	49.6	60.8	40.5	54.4	40.8
	전(월)세	40.7	86.6	44.2	50.4	39.3	59.5	45.6	59.2
거주지역	서울	21.6	16.6	20.2	22.0	22.3	18.4	21.3	14.0
	광역시	23.5	29.3	22.4	27.1	23.5	25.8	24.5	23.5
	도	54.9	54.2	57.4	51.0	54.2	55.9	54.2	62.6

주: 1) 자산유형 및 소득의 정의는 〈표 2〉와 동일함.

2) 5차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KOWEPS 5차년도 원자료

앞서 언급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자산의 규모는 연령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은퇴 무렵 이후 시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른바 역U자 또는 둥근 언덕형(hump shape)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산빈곤은 이와 반대로 연령 증가에 따라 U자의 형태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가구의 연령집단별 자산빈곤의 모습은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 가구와는 다르게 30~40대 연령층에서 모든 자산유형에서 자산빈곤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자산3’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근본적으로 소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

는 것 자체가 힘든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빈곤에 대한 빈곤대책과 더불어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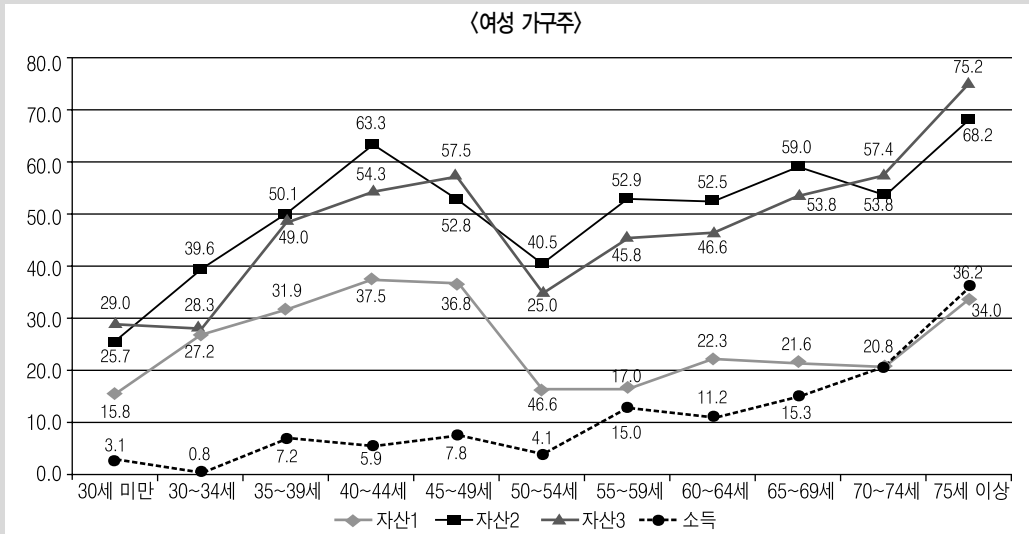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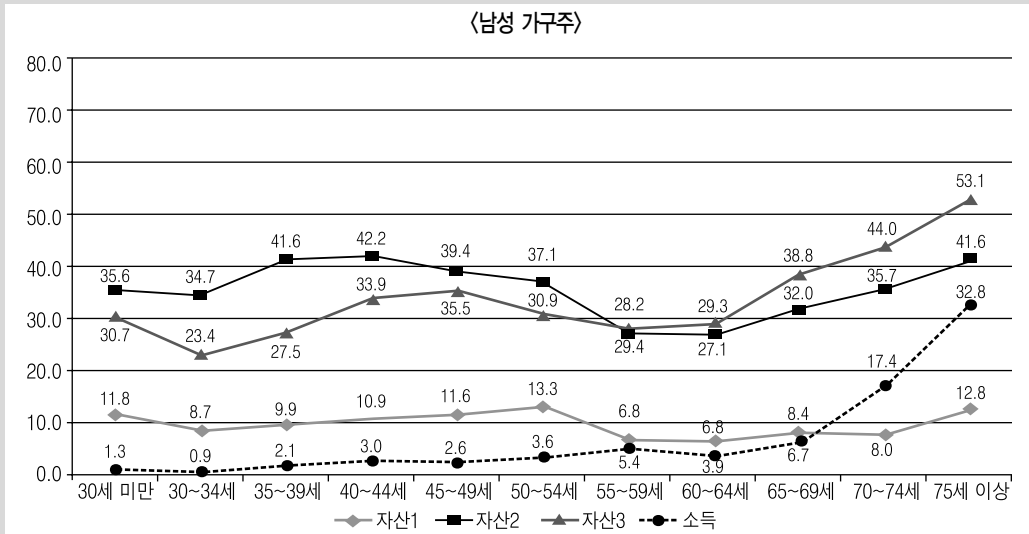
그리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유산을 남겨주려는 동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려는 예비적 수요 등으로 인하여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득빈곤 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자산1’ 기준의 자산빈곤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2’와 금융자산인 ‘자산3’ 기준의 자산빈곤 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실물자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별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보유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의 부실이 늘어나거나 노후가 오히려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에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여건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1. 가구의 성별×연령대별 자산빈곤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주: 5차년도 횡단면 가구기준치를 적용함.
자료: KOWEPS 5차년도 원자료

5. 결론

지금까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중반 이후 자산빈곤 가구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산은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저축과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논의 중에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아동 발달지원제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에 대한 논의는 환영할 일이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최

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자산형성지원제도와 소득보장제도가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형태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운이 좋아 가입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어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근로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스스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자활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진**